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규정 등〉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31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환류 의무화 등	2
2. 평가수행기관 및 평가전담기관 지정 등	7
※ 참고자료	
1. 문화영향평가 제도 운영 개요	11
2. 문화영향평가 연도별 유형별 실시 건수	12
3. 제21대 국회 유사 법률 발의 및 심사 현황	12
4. 법령 개정 효과(도식화)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하의원 등 14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27.

다. 회부연월일 : 2024.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고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영향평가가 각종 계획 및 정책 수립에 있어 문화적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의 예산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하고,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전문화·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환류 의무화 등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문화영향평가서 및 평가를 반영한 계획·정책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체부장관은 제출된 평가서 등의 사항을 보완·조정하며,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생략)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u>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u>)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 ----- ----- ----- <u>이하</u>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9조의2(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계획·정책에 대</u>

현 행	개 정 안
	<u>한 평가결과를 포함한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정책의 보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④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계획·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3년 현행법의 제정에 따라 도입되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시범평가를 거친 후,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왔음.

그런데, 현행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¹⁾은 문화영향평가의 실시 및 대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평가결과를 반영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 문화영향평가의 후속조치는 평가결과를 대상 계획·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문화영향평가의 평가결과 및 평가환류사항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된 사항을 보완·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자료제출 요청 권한 신설 등 평가제도의 환류절차 강화를 통해 동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문화영향평가는 평가 대상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의무절차도 아닌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로

1)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추진되고 있고, 평가결과의 환류 의무에 관한 규정 없이 규제적 기능이 크지 않은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개정안과 같이 평가결과 및 환류사항 제출 및 이에 대한 보완·조정 규정이 신설될 경우 문화영향평가의 규제적 측면이 다소 강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문화영향평가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한편,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현재 운영되는 여러 영향평가제도가 평가서 검토 과정에서의 자료제출, 검토의견 제시, 평가결과의 환류 등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표 1] 각종 영향평가 검토 및 환류 규정

제도명	평가 검토 및 환류 절차
환경영향평가	근거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8조 등 (평가서 검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시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평가결과 환류)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최대 2회) 이 외에 환경부장관은 법령상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거나, 대상사업의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음.
성별영향평가	근거규정: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및 제9조 등 (평가서 검토)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평가결과 환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영향평가	근거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등 (평가서 검토)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평가수행기관 및 평가전담기관 지정 등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수행기관’과 지표 개발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3(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문화영향평가수행기관(이하 “평가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분야의 정책 연구와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평가수행기관에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현행	개정안
<신 설>	<u>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u>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u> <u>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수행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9조의4(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u> <u>1.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연구</u> <u>2.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훈련</u> <u>3.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u> <u>4. 평가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u> <u>5. 그 밖에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u>

현행	개정안
	<u>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현재 문화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시행령²⁾ 상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정³⁾되어 평가 수행 및 평가제도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전담기관이나 수행기관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과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수행기관’과 문화영향평가 제도 자체를 연구·운영하고 수행기관을 교육·관리·평가하는 ‘전담기관’을 각각 지정하여 문화영향평가의 전문성 축적 및 평가체계 효율화·고도화 등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

2)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민간 연구기관

3)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등 지정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7.8.1.)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및 문화정책 조사·연구 전담기관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정되었음.

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⁴⁾.

다만, 개정안이 수행기관의 지정취소 요건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담 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방안, 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정취소가 침익적 행정처분임을 고려하여 지정취소 절차에 청문 등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문 의 처
02)6788-5380

4) 참고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평가 지표 개발·작성·보완, 평가기법 등의 적정성 여부 평가·개발, 관련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두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실제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 현황 조사
2. 환경영향 예측·분석
3.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관리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작성·보완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3.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 1

문화영향평가 제도 운영 개요

□ 현행 문화영향평가 개요

- (목적) 국가·지자체 계획·정책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 확산 도모(문화기본법 제5조)
-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정책·사업*
 - * (문체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문화영향평가 의무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문화영향평가 시 가점), (국가유산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문화영향평가 권고) 등

연도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2년	1,590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 문화영향평가 선정 및 평가 50건
'23년	1,594		· 문화영향평가 선정 및 평가 60건
'24년	1,515		진행 중

□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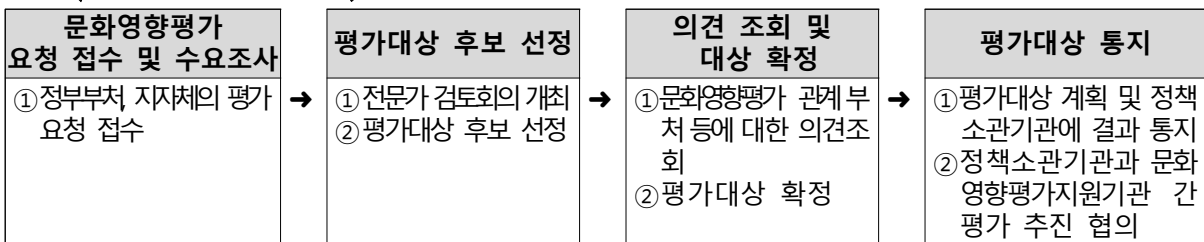
- (평가지표)

구분	평가영역	평가지표	고려사항
공통 지표	문화 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향유권, 문화환경권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참여권, 정보문화향유권
	문화 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보호, 문화유산향유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공동체 갈등발생가능성 사회적합의
	문화발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권리, 문화평등권, 문화격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발전, 미래지향성
특성화 지표	※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적용		

- (평가 유형) 평가 심도(수준)에 따라 진단<약식<전문평가로 구분·실시

평가 유형	내 용	평가방법	소요기간
진단평가	관련 정책(사업)의 자체 수준 진단 및 인식 제고	(정책담당자) 진단평가서 작성제출→(외부전문가) 검토의견 송부 →(정책담당자) 반영계획 제출	1~2개월
약식평가	사업(정책)에 대한 외부전문가 위원 평가	(정책담당자) 약식평가서 작성제출→(외부전문가) 평가결과 통보 →(정책담당자) 반영계획 제출	2~3개월
전문평가	다년도 종합 사업(정책), 새로운 유형의 사업 등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평가	외부 전문기관 공모·선정 →(정책담당자) 반영계획 제출	3~7개월

- (평가대상 선정 절차)



참고 2

문화영향평가 연도별 유형별 실시 건수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진단	20	2	31	40	36	129
약식	15	32	12	14	22	95
전문	11	8	7	6	2	34
계	46	42	50	60	60	258

참고 3

제21대 국회 유사 법률 발의 및 심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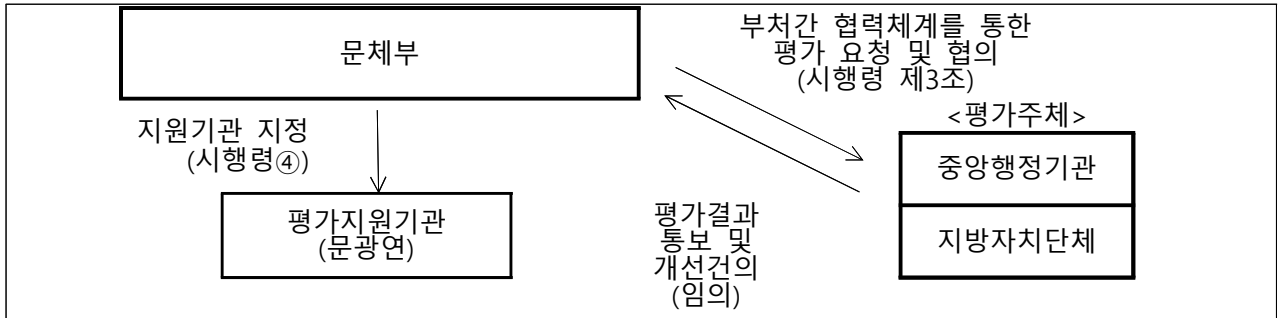
• 제21대 국회 유사 법률 발의 및 심사 현황

법률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심사경과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
문화 기본법 일부 개정안 (6044)	유정주 (‘20.12.2.)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문화 영향평가 평가 수행기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 으로 규정	(상임위) •상정(‘21.2.24) •소위(‘21.6.23) •임기만료폐기	•문화영향평가 대상 범위 관련 -(김승수의원) 개정안에서 규정한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음 (법안 소위 ‘21.6.23) •문화영향평가의 효과성 관련 -(김승수의원) 문화영향평가 우수사례 정보 제출 요청 (법안 소위 ‘21.6.23)
문화 기본법 일부 개정안 (6799)	안민석 (‘20.12.21.)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평가 결과 제출 및 필요시 보완 의무화 규정		•문화영향평가의 규제적 성격 관련 -(김예지의원) 지자체 등의 사업에 있어 정부의 간섭 최소화 필요(법안 소위 ‘21.6.23) -(김성원의원)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해석됨 (법안 소위 ‘21.6.23)

참고 4

법령 개정 효과(도식화)

<현행 평가체계>



<법 개정 후>

